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2008년 9월 1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한 두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검토 보고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 . 개정이유

마포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함.

II 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

- 1)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둠(안 제3조)
- 2)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야간경관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·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)

나. 위원회의 구성

- 1)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(안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)

- 2) 위원은 건축·도시계획·조명·조경·조형예술·색채·환경·디자인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관계 공무원, 그 밖에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함(안 제4조제3항)

다. 소위원회

-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라. 의견청취

-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마. 수당 등

-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Ⅲ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안은 2008년 2월 14일자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됨에 따라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마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동 조례 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를

설치하도록 했으며, 안 제4조(위원회의 구성)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, 뉴타운사업, 재개발·재건축 사업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여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건축물 외관디자인, 도시구조물, 가로시설물 등 주요 도시공공 디자인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, 야간경관 기본계획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및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·자문하도록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이며,
- 제정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「경관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, 「건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등과 자치법규인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」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법하나,
- 현재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이므로 도시 관리국소관 위원회중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연관성이 있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됨.

IV. 관계법령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【 지방자치법 시행령 】

제80조 (자문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